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13일, 김용태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태 의원)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현재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같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고 있으나, 외국인가정의 학생 수가 10년 전 대비 10배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의 구성비 또한 약 25% 수준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등 이주배경학생 집단의 구성이 다양화되었으므로, ‘이주배경학생’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는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미 다문화학생보다 범위가 넓은 이주배경학생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2023년 6월 2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주민’ 용어 사용을 제안한 이래로 각 부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도입국학생이나 외국인학생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되는 추세 역시 개정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한편, 안 제28조의2제6항의 지원 주체로 교육감을 설정한 것과 관련, 2024년 밀집학교 100개교 중 88개교가 7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밀집도의 시·도별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책 수립·시행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설정한 것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용태 의원, 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